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107602 판결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나205509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107602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 선고 2015.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4,565,97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615,97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군대 동기로서 전역 후 친구 사이로 지내오다가 2009. 4. 27.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B101호 소재 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보험대리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대표이사는 F, 사내이사는 G와 피고, 감사는 H이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 F, G, H를 소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여의 경위

1) 원고는 2010. 4. 1.경 E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억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입금 즉시 위 돈을 E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I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E으로부터 상환받았다.

2) 원고는 2011. 1. 20. E, G, F, H(이하 '주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앞서 E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1억 2,00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이자는 월 1.5%(연 18%), 변제기는 2012. 1.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입금 즉시 위 돈에 자신의 돈을 합한 1억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3) E은 이 사건 대여 당일 어음금을 2억 2,000만 원(이 중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은 피고가 주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돈이다), 발행인을 E, 지급기일을 2012. 1. 2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모두 서울특별시,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증서 2011년 제42호), 나머지 주채무자들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불보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1년 01월 20.일 공정증서 2011년 제42호에 기재된 약속어음 2억 2천만원 중 2억 원에 대하여 발행인인 (주)E(대표이사;F, 대표이사;G, 감사;H) 등 3인이 수취인인 원고에게 월 1.5%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일 원금손실 등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3인이 연대보증하여 손실액을 변제함은 물론 이로도 손실액이 부족할 경우 피고는 강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대한 본인 지분 중 위 2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만큼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보증함.

단, 회사가 이익발생으로 상응한 배당을 하거나 원리금이 모두 상환 처리되면 이 보증도 자연 소멸됨을 명시함

2) 주채무자들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일금 이억원(₩200,000,000)

2011년 1월 20.일 원고가 대여한 차용인[주채무자들]이 차용한 위 금원에 대하여 대여인 원고가 위 차용인들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피고는 책임지고 이억원에 대하여 상환한다. 또한 A이 채무변제 소송 후 위 차용인들로부터 소송금액 전부 반환받을 경우 피고에게 반환하며 일부를 상환받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진다.

3) 원고가 그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연대보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2. 5.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지분 및 투자금 정산을 위한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 2012. 11. 29. 쌍방이 같은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을 제6호증의 1) 및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위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 약정임]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4)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도 연대보증한 2억 원에 대하여서는 "갑"이 차용인을 대상으로 소송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료시에는 즉시 "갑"에게 지급하며 "을"의 요청시에는 "갑"이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내역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

1	2011. 03. 02.	3,000,000
2	2011. 03. 31.	3,000,000
3	2011. 05. 02.	3,050,000
4	2011. 06. 01.	2,000,000
5	2011. 07. 04.	2,000,000
6	2011. 08. 09.	1,000,000
7	2011. 09. 05.	1,000,000
8	2011. 10. 03.	1,000,000
9	2011. 11. 03.	1,000,000
10	2012. 01. 03.	1,000,000
합계	18,050,000	

마. 피고의 원고 명의의 보험료 대납

피고는 자신이 영업담당자로 재직하는 리치윌에셋(주) 보험대리점에서 원고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3년 납 5년 만기의 저축보험을 가입하여 2011. 8. 12.부터 2012. 4. 12.까지 각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이후부터는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 28. 위 저축보험을 해지하고 해약금으로 7,575,808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 2) 피고가 2011. 3. 2.부터 2012. 1. 3.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2011. 8. 12.부터 2012. 4. 12.까지 9회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위 연대보증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 3) 피고는 2012. 11. 29.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통해 원고에게 2억 원에 한하여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변제한 부분은 없다.
- 4) 피고는 2012. 12. 5.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한 바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 2) 피고가 2011. 3. 2.부터 2012. 1. 3.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있었던 금전 거래가 계속 이어진 것이거나, 원고의 계속된 연대보증 압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용금의 연체된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 3)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로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지불보증서(을 제4호증),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 내용도 연대보증이 아니라 담보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손해담보약정과 유사한 계약에 불과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주채무자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는 주채무자인 E의 사내이사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온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지불보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④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갑 제2호증),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한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에는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칭한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2.부터 2012. 1. 3.까지 10회에 걸쳐 약 1개월 간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특히 최초 2회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대여 계약상의 월 이자 상당액 300만 원(2억 원 × 1.5%)과 일치하고, 송금 적요에 원고의 이름을 지칭하며 '종용이자'로 기재하였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계약상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2011. 6. 1.부터는 원고에게 20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와 동시에 2011. 8. 12.부터 원고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한 저축보험의 보험료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월 이자 명목의 송금액을 감축하는 대신에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여 당일 같이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및 이행각서(을 제5호증)에 피고의 성명이 삭제되어 있고, 지불보증서(을 제4호증)의 문언 내용이 통상의 연대보증과는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여 당시부터 연대보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가 2012. 11. 29. 차용증서(갑 제2호증)을 통해 원고에게 향후 주채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12. 12. 5.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를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한도를 2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한도의 제한 없이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만약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채무자들을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결과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채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종료하는 것이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의 조건이나 기한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4.경 지불보증서(을 제4호증)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차용증서(갑 제2호증),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지불보증서(을 제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후에 성립된 차용증서(갑 제2호증),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속약정서(을 제6호증의 2)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원고가 위 부속약정서는 피고가 약정했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본래의 취지는 주채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의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부속약정서에 기한 연대보증사실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계산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5,625,808원(1,805만 원 + 7,575,808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 1.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까지의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인 130,191,780원[2억 원 × 3년 × 연 18%, 원 미만 생략]에 변제충당하면, 2014. 9.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04,565,972원(130,191,780원 - 25,625,808원), 원금은 2억 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은 304,565,972원(104,565,972원 + 2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한도가 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한도 내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25,625,808원을 변제한 후에도 그 변제금을 공제함이 없이 2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한도액은 여전히 2억 원으로 본다)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304,565,972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박현경

판사김지건